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95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 백혜련·정성호·이재관

장철민 • 윤종군 • 이기헌

안태준 • 민병덕 • 민홍철

이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있음.

한편 스토킹은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별도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함.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 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 임(안 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신설). 법률 제 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	
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	
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 설></u>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피해자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